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5. 10. 20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7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설위원회(2015.10.19)

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갑수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 안전 및 재난 총괄 조정, 안전문화 확산 등 사회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고,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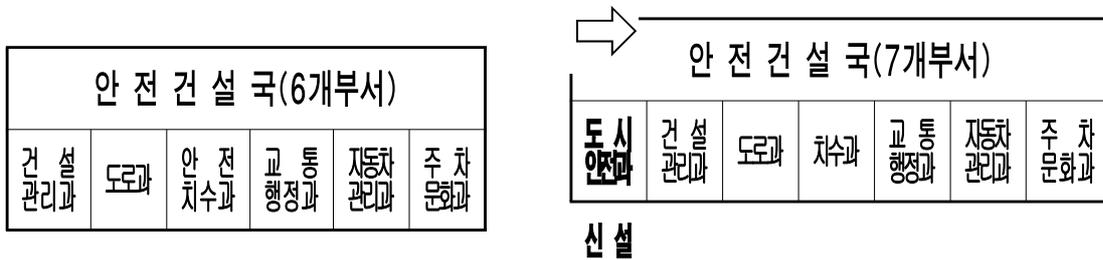
나. 주요내용

- 재난안전 전담 부서인 '도시안전과'를 안전건설국에 신설
-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명으로 변경
  - 세무과 → 징수과      - 안전치수과 → 치수과
- 팀 재배치에 따른 국간 업무 이관

- 자치법규안의 심사, 소송에 관한 사항 : 재정국으로 이관
-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·보존에 관한 사항 : 행정국으로 이관
-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, 민방위대 편성,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: 안전건설국으로 이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기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신규 설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종전 5국 1담당관 29과가 5국 1담당관 30과로 개편되어 1개부서가 안전건설국에 신설되는 것임.


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신설 예정인 ‘도시안전과’는 종전 ‘안전치수과’의 안전·재난 관리 업무와 ‘자치행정과’의 민방위 업무 및 ‘홍보전산과’의 통합관제운영 업무를 이관 받아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지역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임.

참고로,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36%인 9개구<sup>1)</sup>가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.

- 또한, ‘세무과’를 ‘징수과’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들이 부서에서 하는 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‘안전치수과’는 ‘치수과’로 변경하여 하천·빗물펌프장 관리 등 치수분야 업무 담당 부서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였음.

- 그 밖에, 자치법규안의 심사 및 소송업무와 지방의회 업무를 분리하여 법무행정의 전문화와

1)용산구,동대문구,중랑구,양천구,금천구,관악구,서초구,강남구,송파구

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,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·보존 업무를 민원처리 부서에서 처리 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민원 편의성을 추구하였음.

- 구민 안전을 위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전담기구인 ‘도시안전 과’를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.
  
- 다만, 부서명칭 변경, 업무이관 등의 조직개편이 그 동안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 구민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82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 이유

지역 안전 및 재난 총괄 조정, 안전문화 확산 등 사회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고, 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쟁력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재난안전 전담 부서인 '도시안전과'를 안전건설국에 신설

나.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명으로 변경

○ 세무과 → 징수과

○ 안전치수과 → 치수과

다. 팀 재배치에 따른 국간 업무 이관

○ 자치법규안의 심사, 소송에 관한 사항 : 재정국으로 이관

○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, 보존에 관한 사항 : 행정국으로 이관

○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, 민방위대 편성,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: 안전건설국으로 이관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사항

- 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대상사무 없음)
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원안 동의)
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원안 동의)

라. 기타 사항

- (1) 입법예고(2015.9.10.~9.30, 20일간) 결과 : 일자리정책과 의견있음.

- ‘일자리정책과’의 제출 의견 및 조치 내용

- 제출 의견 : ‘일자리정책과’의 부서명을 현행대로 유지
- 조치 내용 : 의견 반영

- ▶ 기존 : ‘일자리정책과’를 ‘일자리지원과’로 한다.

- ▶ 변경 : ‘일자리정책과’의 부서명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·보존에 관한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세무과”를 “징수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자치법규안의 심사, 소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뉴타운사업”을 “재정비축진사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건설관리과, 도로과, 안전치수과”를 “도시안전과, 건설관리과, 도로과, 치수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하며,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.

제9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, 민방위대 편성,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재정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 중 “총무과”를 “기획예산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하고, “총무과”를 “기획예산과”로 하며, “의회법무담당주사”를 “법무담당주사”로 하고, “의회법무담당”을 “법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일자리추진단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안전치수과장”을 “치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6조제2항 중 “안전치수과장”을 “도시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안전치수과장”을 “도시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안전치수과장”을 “도시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안전치수과장”을 “도시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행정국) ① (생략)</p> <p>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자치법규안의 심사, 소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8. (생략)</p> <p>9. <u>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, 민방위대 편성,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~ 1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18. ~ 22. (생략)</p> <p>제6조(재정국) ① 재정국에 기획예산과, 재무과, 지역경제과, 일자리정책과, <u>세무과</u>, 부과과를 둔다.</p> <p>②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통계,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, 보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14. (생략)</p>	<p>제5조(행정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지방의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10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18. <u>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, 보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9. ~ 23. (현행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)</p> <p>제6조(재정국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<u>징수과</u> 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자치법규안의 심사, 소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
제8조(도시국) ① (생략)

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2. (생략)

3. 도시계획의 수립, 조정 및 결정, 도시환경정비사업,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

4. ~ 15. (생략)

제9조(안전건설국) ① 안전건설국에 건설관리과, 도로과, 안전치수과, 교통행정과, 자동차관리과, 주차문화과를 둔다.

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2. (생략)

<신설>

1. ~ 11. (생략)

13. ~ 18. (생략)

제8조(도시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재정비촉진사업 -----  
-----

4. ~ 15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안전건설국) ① -----  
도시안전과, 건설관리과, 도로과, 치수과 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.

1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2.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, 민방위대 편성,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

3. ~ 13. (현행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

14. ~ 19. (현행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)